

# 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

## I 관련규정
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
-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

## II 신청시기 및 서류

### 신청시기

- (신규) 신규신청 공고문의 신청기간에 따름('24년 연 4회 진행)
  - '24. 5. 10.(2차 신청 마감일) 자정까지 '신청'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단계가 '접수 대기중' 상태인 경우만 신청된 것으로 인정
  - \* 신청버튼을 누르지 않아 '입력 진행중'인 상태는 신청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

#### < 공고별 신청기간 >

구 분	신청기간	인증서 발급 예정
제1차	2024. 2. 13(화) ~ 2. 21(수)	2024. 6월
<b>제2차</b>	<b>2024. 4. 25(목) ~ 5. 10(금)</b>	<b>2024. 8월</b>
제3차	2024. 7. 15(월) ~ 7. 26(금)	2024. 11월
제4차	2024. 9. 30(월) ~ 10. 15(화)	2025. 2월

- (연장·규격추가) 연중 수시 신청 가능
  - '연장'은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,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에 유의
  - \* 예) 성능 인증기간('21. 7. 28. ~ '24. 7. 27.) → 연장 신청기간('24. 3. 29. ~ '24. 5. 28.)
  - 정기 심사(연 4회) 일정에 맞춰 연장·규격추가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, 인증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조기 신청할 것을 권고

## □ 신청서류

- 신청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 포함하여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,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는 심사 시 불인정
  - ① 형식승인, ② 근거기술, ③ 성능, ④ 가격경쟁력 등 중요 심사항목의 신청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
    - 공고문의 '신청서류 목록(p4)'에 따라,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, 서류의 내용과 증빙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
    - SMPP 신청페이지의 지정된 항목에 서류가 올바르게 제출되었는지,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(규격서, 연장신청 설명서 등)와 SMPP에 등록된 정보가 일치하는지, 오탈자는 없는지 등 확인
- \* 지정된 항목 외 다른 위치에 제시하는 경우 심사에 혼선을 주어 불인정될 수 있음

## Ⅲ 신청 불가 품목

\* 시행세칙 제6조, 제26조 참고

- ① 의약품(동·식물용 포함), 의약외품, 미생물, 농·수산물, 총포·화약류, 사행성 제품, 비 가공제품, 식·음료품(동·식물용 포함)
- ②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
- ③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
- ④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

※ 신청제품이 '신청 불가 품목'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격서에 해당 항목에 제시하거나, 별도 소명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필요

## IV 중요서류 제출 시 확인사항

### □ 형식승인 증빙 관련 확인사항

#### 신규만 해당

1. 형식승인 해당여부와 내용은 규격서에 제시하고, 증빙은 SMPP에 제출
  - (내 용) 규격서 '2. 신청제품 개요 > 나. 인용 규격 > 1) 형식승인'에 제시
  - (증빙) SMPP 신청페이지 '법적 필수 인증, 형식승인 자료'에 제출
  - 해당하지 않는 경우 '해당 없음'으로 기재
  -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 제출 (확인불가 or 불일치 시 부적합)
  - 규격서에 제시한 내용 수·종류와 증빙 수·종류가 일치해야 함
2. 형식승인 증빙은 관련 기준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시되어야 함 (인증서, 시험성적서 등)
  - 형식승인 관련 기준을 캡처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,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

### □ 근거기술 증빙 관련 확인사항

#### 신규만 해당

1. 근거기술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, 근거기술 증빙서류 제출 \* 공고문 [참고] 1
2. 출원 중인 특허, 발급 전인 인증, 완료·성공 판정 전인 기술개발제품 등 확정되지 않은 근거기술은 활용 불가

#### < 근거기술 유효기간 >

구 분	유효기간
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	등록일로부터 특허 7년, 실용신안 5년 이내
유효기간이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	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
법률에 근거한 인증한 제품 (유효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)	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
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	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

**공통사항**(신규, 규격추가, 연장)

**1. 근거기술의 적용여부와 내용은 규격서에 제시하고, 증빙은 SMPP에 제출**

- (내용) 규격서 '3. 적용된 기술 > 가. 적용된 기술'에 제시
- (증빙) SMPP 신청페이지 '근거기술자료'에 제출
- **SMPP-"신청근거", 규격서 "적용된 기술", "근거기술자료(증빙)"는 일치해야 함**  
\* 근거기술로 1종을 선택하되, 특허의 경우 다수 제시 가능(단, 적용 입증 필요)

**2. 근거기술의 권리상태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으로 제시**

- 특허는 특허 등록원부로 확인, 특허 외 서류는 필요 시 별도 추가자료 제출  
\* 특허의 경우,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 불인정  
(권리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확보 필요 - 등록원부상에서 확인 가능해야함)
- 특허 외 근거기술이 공동권리 상태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를 근거기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나, **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**

**< 근거기술 권리 상태별 신청가능 여부 >**

권 리	신청가능 여부	비 고
신청기업 단독보유	가능	-
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전용실시권 보유	조건부가능	-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내용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* 실시권자 : 신청기업 단독 * 전용실시권 범위 1) 기간: 예상되는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게 설정 (ex 4~7년 이상) 2) 지역: 국내 전체 (ex 대한민국 전지역) 3) 내용: 신청제품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한 모든 권한 (ex 특허법 제 2조 제 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)
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이 단독 보유	조건부가능	- 개인사업자(일반과세자)이고, 대표자 개인 단독 보유만 사용 가능 * 직원 보유, 법인 신청기업 활용 불가
신청기업 공동 보유	불가	- 신청기업으로 권리를 전부 이전 또는 신청기업 단독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 등록 후 활용 가능
신청기업 대표자 공동 보유	불가	
신청기업이 통상실시권 보유	불가	
신청기업이 전용·통상실시권 부여		

## □ 성능 증빙(시험성적서) 관련 확인사항

### 공통사항(신규, 규격추가, 연장)

1. 성능 기준, 시험방법, 시험결과 및 우수성(비교대상 필요)의 내용은 규격서에 제시, 증빙(시험성적서)은 SMPP에 제출
  - (내용) 규격서 '4.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'에 제시
  - (증빙) SMPP 신청페이지 '시험성적서'란에 제출
2.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KOLAS시험성적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
3. KOLAS(한국인정기구) 시험성적서란 **KOLAS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**를 의미
  - \* 의뢰한 시험항목으로 KOLAS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시험성적서
4. KOLAS 시험성적서 제시가 불가한 사유는 **국내에 해당 시험항목으로 발급가능한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만 해당함**(비용 또는 시간의 문제는 인정되지 않음)
5.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
6. 시험성적서에는 시료명(규격, 모델명), 시험방법, 시험장소, 시험결과, 사진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, 신청제품(규격, 모델명)과 시료명이 다르지 않도록 유의
7. **신청기업 단독으로 제시한 시료**(신청제품 또는 관련부품)로 시험성적서 발급
  - 신청제품(완제품)은 기본적으로 제시, 필요시 관련부품에 대한 성적서 추가 제시
8. 연속된 다양한 규격의 모델을 신청한 경우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최대, 최소, 중간규격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시
  - 제시한 모든 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경우 대표 성적서 하나로도 인정 가능하지만 객관적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인정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

[예시]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의 성적서 (X),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진 모델의 성적서 (O)  
(단, 제시 모델이 가장 열악한 조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별도 필요)

### 규격추가만 해당

- 공통사항을 참고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필요여부를 판단 하고, 기준에 맞추어 제시

### 연장만 해당

1. **새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**는 최초 성능인증 취득 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에서 제시한 항목, 기준 등을 **동일하게 설정**하여야 함
  - 항목 및 기준 등이 미달하거나, 누락된 경우 부적합
2. 신청 시 인증제품의 시험성적서는 신청자가 연장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
  - 단, 적합성심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검사 수행 가능

□ 가격경쟁력(LCC 등) 증빙 관련 확인사항

신규만 해당(연장 일부 적용)

1. 가격경쟁력(비교대상 필요) 내용은 규격서에 제시, 증빙(LCC 등)은 SMPP에 제출
  - (내용) 규격서 '5. 제품의 시장성 > 가.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> 3) 가격경쟁력'에 제시
  - 제시하는 내용이 제3자에게도 납득이 되도록 타당하게 구성
  - 증빙은 SMPP 신청페이지 '추가제출자료 > 제출자료'란에 제출
  - 반드시 LCC(Life Cycle Cost) 분석 자료로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, 객관적인 증빙은 필요

올바른 작성 예시				부적절한 작성 예시		
(단위 : 원)				<b>신청제품이 더 저렴함</b>		
구 분	신청제품 (a)	비교제품 (b)	비고 (a-b)	또는		
취득원가	7,000	14,000	-7,000	(단위 : 원)		
사용원가	2,000	4,000	-2,000	구 분	신청제품 (a)	비교제품 (b)
폐기원가	1,000	2,000	-1,000	단 가	10,000	20,000
⋮						
합계	10,000	20,000	-10,000	* 수치화해서 제시하지 않아 판단 어려움 * 단가 산정 내역을 알 수 없게 제시 * 신청제품과 비교제품 정보 확인 불가 * 증빙자료의 객관성 결여 (ex 견적서, 자체 제작자료 등)		
* 단가 구성 이해를 돕기 위해 산출 내역을 기본으로 제시 * 비교대상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제품과 비교제품의 정보 제시 * 비교제품이 성능 우수성 비교대상과 다르다면 다르게 설정한 사유 제시 * 제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						

2. 연장신청을 두 번째 사유(인증 유효기간 연장 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)로 선택한 경우, **동종·유사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제시할 때 작성요령으로 참고**

## V 신청자 정보 및 기타 확인사항

### □ 신청자 정보

- SMPP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(휴대폰, 이메일) 정보를 가장 최신화된 정보로 정확하게 기재
  - SMPP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로만 연락을 드리니 유효한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
  - 요건검토 의견은 대표자 및 담당자 메일정보로 전달하며, 수납요청, 연장신청 시기 안내 등 일부 안내는 대표자 휴대폰으로만 SMS 발송
  - 대표자 정보는 'SMPP > 나의업무 > 기업정보 등록/변경'에서 변경 가능하고, 담당자 정보는 신청페이지에서 변경

### □ 신규신청 기타 확인사항

- GS인증(1등급)을 근거기술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, 타제품과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함
- 규격서의 성능인증 신청범위 항목에서 인증 효력을 갖고자 하는 범위를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모델명을 부여하여 제시
  - 규격서 2. 신청제품 개요 > 다. 성능인증 신청범위에 표 형태로 제시
  - '다. 성능인증 신청범위'에서 모델 간 규격이 구분되지 않거나 모델명이 중복되는 경우 삭제·수정 처리될 수 있음
  - 하나의 모델에 연속된 다양한 규격이나 범위 규격은 제시 불가
  - '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' 등 규격 변경의 여지를 두는 문구 사용 불허
- 신청 불가 품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유의
  - \* 신청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이지만 제3자에게는 부품 또는 반제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불가 품목이 아닌 단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을 권장

## □ 규격추가 기타 확인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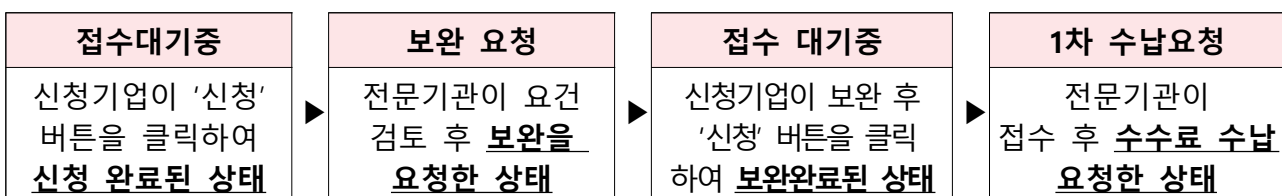
- 규격추가 신청범위가 심사지표에서 요하는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제3자 입장에서 검토 및 제시
  - 동일 기술·제품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근거, 신규신청이 아닌 규격 추가로 신청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자료 별도 제출
  - 규격추가 범위가 신규인증(신규 발급 후 규격추가 건이 별도 있는 경우 최종 규격 추가건 기준) 시 제시한 범위 외인 경우 추가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시 필요
  - 제시범위 내인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소명은 필요

[예시] 신규인증(신규 발급 후 규격추가 건이 별도 있는 경우 최종 규격추가 건 기준) 범위가 1~5라고 가정했을 때 금번 규격추가 건이 1~5의 범위 외인 7인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, 1~5 범위 내의 경우 제출 선택 및 소명 필요

## VI 신청 이후 확인사항

- 전문기관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**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**(접수대기중→보완요청)
  -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 후 **'신청' 버튼을 클릭**(보완요청→접수대기중)
    - \* 신청기업이 보완이 조치되었다고 판단하여 두 번째 **'신청' 버튼을 클릭하면 전문기관은 실제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수 후 후속조치 진행**
  - 보완기간 내 보완이 불가하거나 '재신청'을 하지 않아서 **'보완요청'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려 후 종결**

### < 신청 이후 SMPP 진행 상태 설명 >





- ‘접수’가 완료되면 공개검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‘접수’ 후부터는 서류 변경 불가(심사결과에 따른 수정은 예외)
  - ‘접수’시점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로만 심사 시 배점 근거로 활용하므로 어떤 서류, 내용, 증빙을 제출하였는지 숙지 필요
  - 공고문 유의사항에서 안내한바와 같이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는 심사 시 불인정하니 추가 반영 요청 불필요
  - 공개검증 범위는 신청기업이 선택한 항목에 따르며, SMPP 선택 사항과 제출 서류상 선택사항을 일치시켜 혼선 없도록 제시
    - \* 불일치 하는 경우 제출 서류 기준으로 공개
  - 공개검증은 신규 건에 한해 적용되는 절차로 규격추가, 연장 등은 해당하지 않음
  - ‘접수’ 이후 공개검증 절차가 이어지며 공개검증 의견이 접수된 경우 소명자료는 적합성심사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
  - 공개검증 의견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(심사일에 의견 접수 등) 필요 시 적합성심사를 다시 개최할 수 있음

## **VII** 적합성심사 시 확인사항

- 적합성심사 발표는 ‘규격서(신규, 규격추가), 기간연장 설명서(연장)’로만 진행하고, 별도 발표자료(PPT, 영상 등) 제출 불가
  - 기본심사 자료인 규격서와 상이한 발표자료로 인한 심사 혼선을 줄이기 위해 ‘22년 2차 공고부터 규격서로만 적합성심사 진행
- 발표시간은 20분, 질의응답 시간은 25분으로 함

- 적합성심사 시 발표자 및 참석자는 본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사자에 한하며,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 함
  - \* 적합성심사(대면발표) 시 확인하여 참석자의 자격 미달 시 심사장 내 입장 불가
-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전문기관이 심사위원 및 신청기업(발표자)의 동의하에 녹취를 진행함
- 전문기관에서 허용하지 않은 전자·통신기기는 심사장 반입 금지
- 적합성 심사일정은 분과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별도 안내
  - 적합성 심사일정은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, 심사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신규신청은 취소 요청 후 다음 공고 시 재신청하기 바라며, 규격추가 및 연장은 1회에 한해 연기 가능(재신청 불필요)
-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적합성 심사분과를 구성하며, 기한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
  - \* 접수 후 7일 이내 발급된 가상계좌로 입금
  - 적합성 심사 일정 확정으로 기업에 공문을 통보한 후에는 심사 철회 요청시에도 수수료가 반환되지 아니함
- 적합성 심사는 SMPP에 제출한 신청 서류로만 심사
  - 금번 차수에 제출한 서류와 지난 차수에 제출한 서류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
    - \* 해당 차수 신청 서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처리

## VIII 제도 안내 및 문의

담당기관		문의사항	전 화
전문기관	중소기업유통센터 (성능인증팀)	신청·접수, 심사 일정, 심사기준, 유의사항 등	042-712-5621 ~ 5625